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39조 [작업지휘자의 지정]











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39조(작업지휘자의 지정) · 조문 원문 전체

① 사업주는 제38조제1항제2호 · 제6호 · 제8호 · 제10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. 다만, 제38조제1항제2호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. <개정 2023. 11. 14.>

②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 · 해체 · 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 ·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차량 그림은 운전 전 설명 장면입니다. 실제 운전 중의 접근·주위 근로자·충돌 위험 조건을 별도로 확인하세요.
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· 시행 2026. 3. 2. · 대조 2026. 10. 29.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39조 [작업지휘자의 지정]











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39조(작업지휘자의 지정) · 조문 원문 전체

① 사업주는 제38조제1항제2호 · 제6호 · 제8호 · 제10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. 다만, 제38조제1항제2호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. <개정 2023. 11. 14.>

②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 · 해체 · 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 ·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차량 그림은 운전 전 설명 장면입니다. 실제 운전 중의 접근·주위 근로자·충돌 위험 조건을 별도로 확인하세요.
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· 시행 2026. 3. 2. · 대조 2026. 10. 29.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39조 [작업지휘자의 지정]











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39조(작업지휘자의 지정) · 조문 원문 전체

① 사업주는 제38조제1항제2호 · 제6호 · 제8호 · 제10호 및 제11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. 다만, 제38조제1항제2호의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. <개정 2023. 11. 14.>

② 사업주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조립 · 해체 · 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 ·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차량 그림은 운전 전 설명 장면입니다. 실제 운전 중의 접근·주위 근로자·충돌 위험 조건을 별도로 확인하세요.
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· 시행 2026. 3. 2. · 대조 2026. 10. 29.